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e-태국인덱스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e-태국인덱스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e-태국인덱스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9월 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9월 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중 법 제 93 조에 따른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e-태극인덱스 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	37617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6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 함)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u>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함.</u>
2. 채권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3.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방침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 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3) 비교지수 : $(\text{KOSPI200 지수} \times 95\%) + (\text{CD 금리} \times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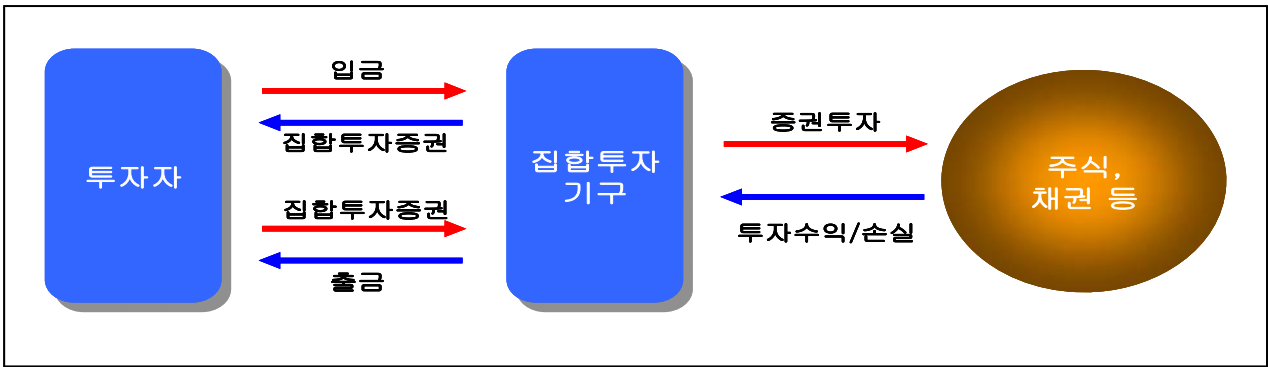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하여($\text{KOSPI200 지수} \times 95\%) + (\text{CD 금리} \times 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것입니다

(4)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 KOSPI200 지수 추적을 위한 현물(주식) 바스켓은 구성종목의 시가비중, 유동성,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주가지수와의 운용성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비중이 KOSPI200 지수의 업종별 투자비중과 유사하게 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자산을 파생상품에 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합니다.

- 계약금액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자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자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

	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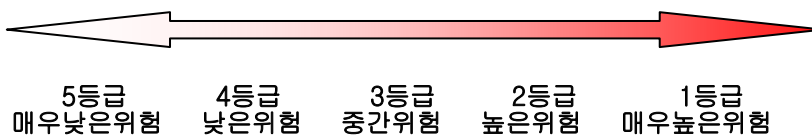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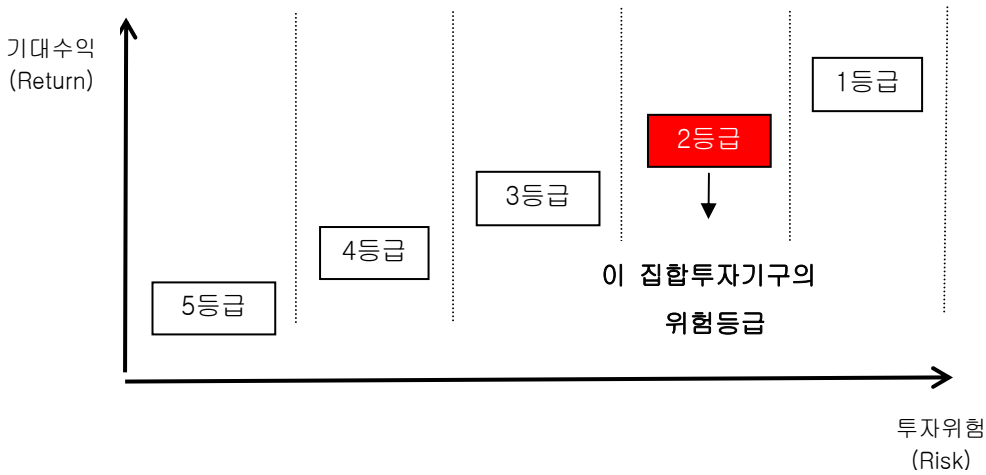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지수추적 오차위험 (Tracking error)	지수복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에서의 오차, 지수선물의 roll over에 따른 오차, 지수구성종목의 변경, 거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하여 추적하는 인덱스의 수익률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상이한 지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중 대형 200종목으로 구성된 KOSPI 200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형 상품으로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 주식형 상품 또는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일으키는 레버리지 인덱스펀드보다는 위험이 낮으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분산요건 : 국내주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KOSPI 수준의 섹터분산이 된 지수

6. 운용전문인력(2009.7.6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진형보	1962	팀장	47 개	5,110 억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파생상품 등 18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 개	1,371 억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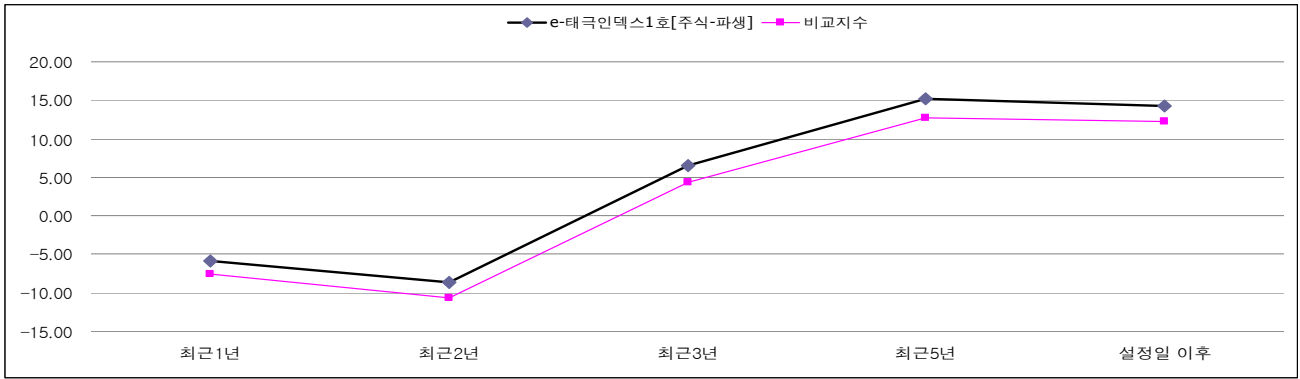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KOSPI 200 x 95%) + (CD 금리 x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09년 7월 6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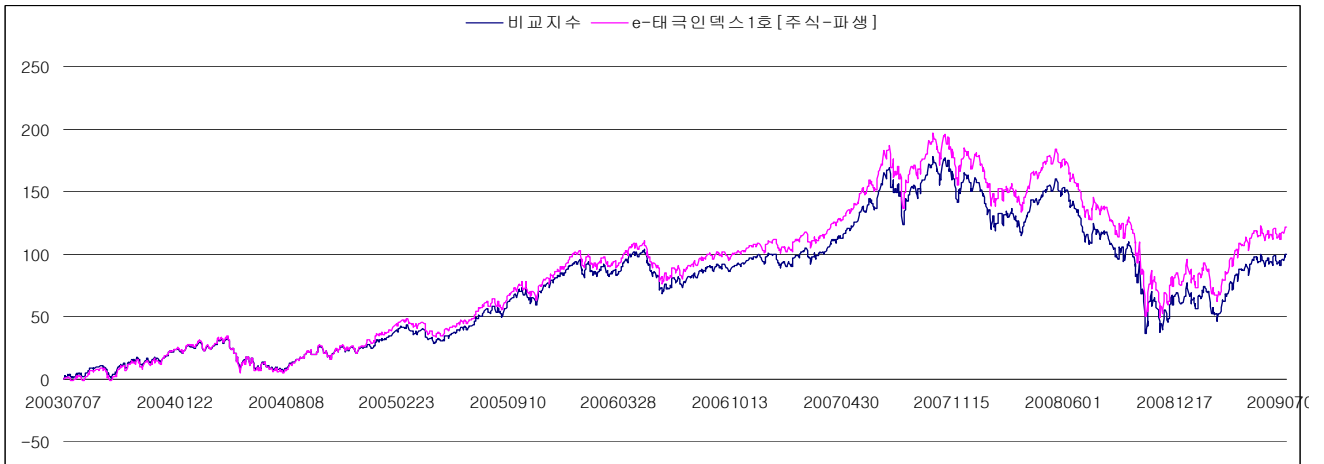
연도	최근1년 2008.07.07 ~ 2009.07.06	최근2년 2007.07.07 ~ 2009.07.06	최근3년 2006.07.07 ~ 2009.07.06	최근5년 2004.07.07 ~ 2009.07.06	설정일 이후 2003.07.07 ~ 2009.07.06
e-태국인덱스1호[주식-파생]	-5.87	-8.65	6.56	15.21	14.30
비교지수	-7.57	-10.66	4.37	12.72	12.3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09년 7월 6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차 2008.07.07 ~ 2009.07.06	최근2년차 2007.07.07 ~ 2008.07.06	최근3년차 2006.07.07 ~ 2007.07.06	최근4년차 2005.07.07 ~ 2006.07.06	최근5년차 2004.07.07 ~ 2005.07.06
e-태극인덱스1호[주식-파생]	-5.87	-11.35	45.00	24.91	34.30
비교지수	-7.57	-13.65	42.45	24.10	28.99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256%	매 3 개월 후금
판매회사보수	0.5264%	
신탁업자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기타비용	0.0512%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8512%	-
증권 거래비용	0.0586%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비용(원)	87,236	275,010	482,032	1,097,241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1.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것
2. 수익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①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 ②(거주자인 개인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한 일반기준가와, 과세 목적을 위한 과표기준가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및 최고한도세율은 관련 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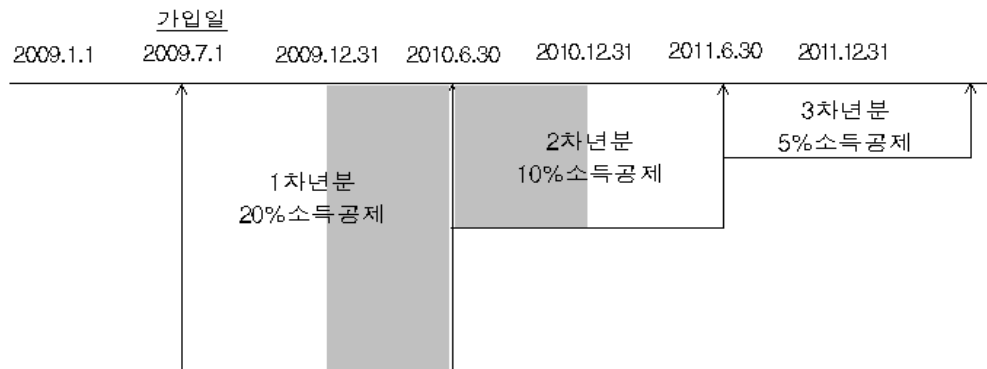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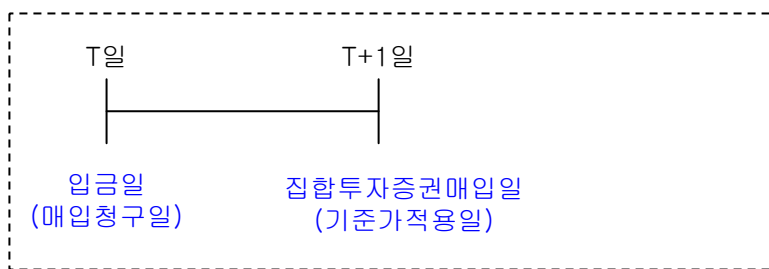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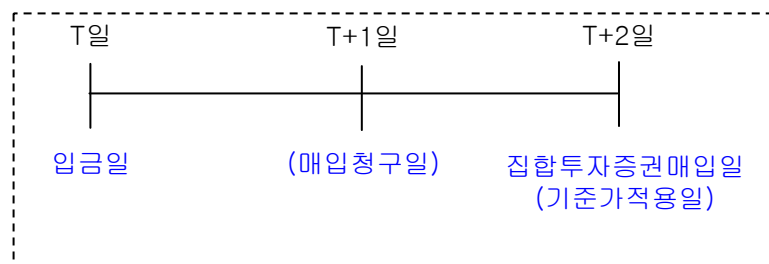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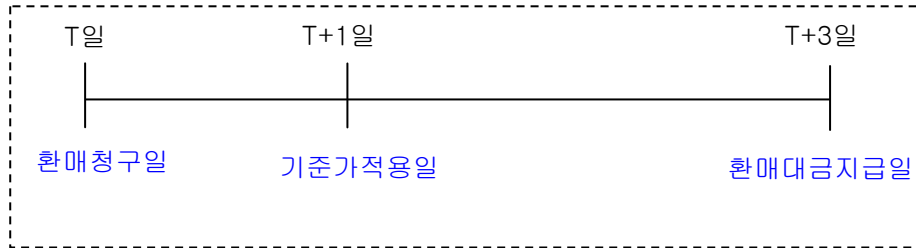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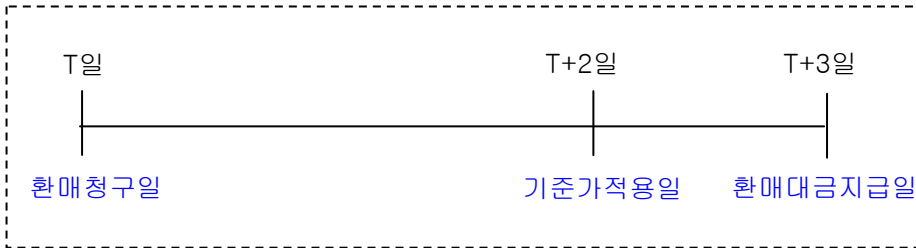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090706	20080706	20070706
I. 운용자산	6,973,851,205	7,252,223,588	5,983,190,033
증권	4,632,354,850	4,028,902,800	2,325,660,000
현금 및 예치금	642,496,355	513,320,788	3,657,530,033
기타운용자산	1,699,000,000	2,710,000,000	
II. 기타자산	24,927,100	3,749,613	22,237,668
자산총계	6,998,778,305	7,255,973,201	6,005,427,701
III. 기타부채	18,019,325	98,949,849	36,383,766
부채총계	18,019,325	98,949,849	36,383,766
I. 원본	8,365,062,429	8,072,980,245	4,116,635,369

II. 수익조정금	-81,182,687	-127,948,814	427,934,373
III. 이익잉여금	-1,303,120,762	-788,008,079	1,424,474,193
자본총계	6,980,758,980	7,157,023,352	5,969,043,935
I. 운용수익	-331,804,528	-722,312,832	1,452,329,426
이자수익	76,555,016	197,411,397	64,425,362
배당수익	73,641,400	74,116,500	39,489,525
매매/평가차익(손)	-488,827,742	-1,014,164,064	1,338,369,392
기타이익	6,826,798	20,323,335	10,045,147
II. 운용비용	55,359,341	65,695,247	27,855,233
관련회사보수	51,780,356	59,733,142	25,604,595
기타비용	3,578,985	5,962,105	2,250,638
III. 당기 순이익	-387,163,869	-788,008,079	1,424,474,193
* 매매회전율	156	891	1
* 매매수수료	3,792,545	29,228,668	2,813,030